

제24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음식물류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5. 3. 13.

임실군의회의회장

##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조항 개정  
(안 제9조 6항 신설)

-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용하는 경우 납부필증 수수료에 의한 종량제 추진
- 2)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에 관한 사항

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 조항 개정(안 제21조)

- 1)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삭제)
- 2)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신설)

##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 1)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5항 (2014.04.30)
-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2012.1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비규제)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4.11.24.~2014.12.13.)결과 : 붙임(의견제출 및 처리사항)

3)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분석 : 붙임(의견반영)

5) 관련법령 발췌문 : 붙임

##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있으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3”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3 >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 수수료

구 분	용기규격	판매 수수료(원)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이익
공동주택	60ℓ	1,800	1,620	180
	120ℓ	3,600	3,240	360
음식점	60ℓ	6,600	5,940	660
	120ℓ	13,200	11,880	1,320

※ 판매자에게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한다. 다만,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② (생   략)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 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고, 기타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 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u>있으</u> <u>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u> <u>우에는 “별표 3”의 수수료를 납부</u> <u>하여야 한다.</u></p> <p>④·⑤ (생   략) &lt;신   설&gt;</p> <p>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처리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p> <p>1. (생   략)</p>	<p>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있다.</p> <p>④·⑤ (현행과 같음) ⑥ <u>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u> <u>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3”의 음</u> <u>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를</u> <u>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필증 판매</u> <u>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u> <u>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u> <u>용한다.</u></p> <p>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 ----- ----- -----.</p> <p>1. (현행과 같음)</p>

2.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

3. (생략)

<신설>

<삭제>

2. (현행 제3호와 같음)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별표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 주택(공동)배출자의 경우

- 세대별로 월정액을 산정하여 징수하되, 10리터의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가격을 총 세대수에 따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대표자, 관리자, 관리사무소 등에 부과하여 징수(원단위 절사)

$\text{월간발생량}(25.2) \times (10\text{리터} \text{쓰레기봉투가격} \div 10) \times \text{부피환산계수}(1.25) \times \text{세대수}$
---

- 월간 발생량 산출

→ 1세대당 평균인구수(2.8명) X 1인당 1일 발생량(0.3킬로그램) X일수(30)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쓰레기봉투(10리터) 가격 변경 등에 따라 연동하여 적용함 [단, 10리터 봉투가격은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액, 부피환산계수(단위부피에 대한 단위중량) : 1.25기준임]

[별표3]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 수수료**

구분	용기규격	판매 수수료(원)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이익
공동주택	60ℓ	1,800	1,620	180
	120ℓ	3,600	3,240	360
음식점	60ℓ	6,600	5,940	660
	120ℓ	13,200	11,880	1,320

※ 판매자에게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한다. 다만,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 임실이도주공아파트관리사무소

수 신 : 임실군 환경보호과

(경 유)

참 조 :

제 목 : 음식물종량제 칩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번에 입법예고된 음식물 종량제 시행에 관한 칩가격인 3,600원은 기존의 세대별 470원 부과한 것에 비하면 약 3배정도 인상된 것과 같아서 저희 아파트만 보더라도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불경기이고, 전북지역은 더욱더욱 심한 불황기를 겪고 있으며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임대아파트인 임실주공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입주민에게는 상당히 큰 인상폭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4. 전에 부과하던 수수료 470원의 칩 가격은 1,300원에 해당하고 2배정도 인상된 4자리수를 넘지않는 세대당 수수료 990원은 칩가격으로 보면 2,700원 정도에 해당되는 바 칩가격이 3천원을 넘어간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5. 이번에 입법예고된 칩가격 3,600원은 기존 제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되어 이의신청을 제기하니 조례가 만들어질 때 꼭 반영하시고 그 결과를 임실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실이도주공아파트관리사무소장



결 재 담당자 정은숙      관리과장 한진호      관리소장 송웅비

시 행 임실이도주공 2014-210 (2014. 12. 18.)

우) 566-805 전북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33-17

전 화 063-644-3133      전 송 063-644-3134 / 공개

담당자	담 당	처리과장	기타사항

##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및 처리계획

###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개정(안)

- 기존 : 정액제 470원/월·세대
- 개정 : 변경 30원/ℓ (납부침)

### ○ 제출의견

- 음식물류 폐기물 칩 방식 도입으로 수수료 인상폭이 높음

###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 ○ 검토의견 및 처리계획

-정부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정액방식에서 배출량 산정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에 의거 2013년 6월1일 이후부터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폐지됨]

또한 동 지침에 의하여 2018년까지 수수료의 80%까지 주민부담률을 달성하여야 하는바, 우리 군에서도 조례개정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조정 및 산정방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귀 아파트에서 제출하신 의견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수수료 현실화 및 배출량 부담원칙이라는 정부시책 추진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수료 조정에 따라 주민부담율은 13.5%로 정부에서 제시하는 주민부담율을 연도별 단계별로 시행하는 첫걸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입주민들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며,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환경보호과-1411(20154.01.15) 음식물류 수수료 조정에 대한 처리계획 회신

##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재정수반 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인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 4. 작성자

- 환경보호과장 김 금 순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2014A 전북임실066		
정책명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임실군	
	담당자명	정호성	전화번호 063-640-2393
주요 분석평가 내용 (임실군)	<p>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감량과 효과적인 배출수거방법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민모니터링단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함.</p> <p style="padding-left: 20px;">⇒검토결과 )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2000년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정부에서는 음식물류 종량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음식물 종량제는 2010년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음식물 종량제를 시행하여, 올해로 6년째 운영하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음식물 분리배출, 수거 처리과정 등 운영과정상 도출된 문제점은 민원(유선), 제안제도등을 통하여 현재까지 개선하여 운영중이며 별도 주민모니터링단 운영의 필요성은 불필요 하다고 판단됨.</p> <p>2.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처리수수료 감면) 대상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p> <p style="padding-left: 20px;">⇒검토결과 ) 의견 반영</p> <p>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 2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 감면) 제2항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를(변경전),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변경</p>		
검토의견 반영 결과 (임실군)	<p>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항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를 “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로 변경</p>		
<p>2015년 01월 19일</p> <p><b>임실군 환경보호과장</b></p> <p>분석평가책임관 귀하</p>			

## 관련(상위) 법 발췌문

### □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5항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 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2010.7.23.,2012.6.1.,2013.7.16.>

###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종량제 시행지침

가, IV. 세부 시행지침, 1.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에 관한 사항,  
라. 종량제 운영시 고려사항

- 매년 수수료 요금의 현실화 및 주민부담률 상향조정을 검토하되 물가상승 및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 하여야 함
- 버린 만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13년 6월1일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함

나.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방법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정착을 위해 주민부담률은 현재 상태를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야 함
  - 수수료의 현실화는 급격한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억제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
    - ⇒ 현재를 기준으로 '13년 말까지 현재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고, 매년 상향 조정하여 특·광역시는 '15년까지, 일반 시는 '16년까지, 도·농 통합 시는 '17년까지, 군 지역은 '18년까지 주민부담률 80% 달성